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 신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 적극활용 요청

1.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각 부처 샌드박스 근거법률*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기정통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기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위) 등

2.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해 **혁신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써,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30일 이내**에 **규제 존재여부**를 **확인**(규제 신속확인)하여,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출시**하고,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임시허가**(안전성 확보 시, 先 출시허용 後 정식허가)', '**실증특례**(안전성 불확실 시,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 허용)'**를 거쳐 정식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 산학협력단 및 유관 회사(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산학연 연구소, 학교기업 등에서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 추진 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조기 출시 또는 테스트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요약) 1부.
2. 규제 샌드박스 설명자료 1부.
3.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보도자료 1부.
4.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1부. 끝.

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 직인

수신처 :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국립대병원, 국립특수학교, 대학법인, 소속기관, 소속단체, 출연연구기관, 전문대학법인, 시도교육청

행정사무관 **이보배** 규제개혁법무대결09/15
담당관 **오신종**

협조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은남**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8394 (2020-09-15) 접수 산학연구팀(천안)-913(2020.09.16)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어진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703 전송044-203-6165 / bobaelee@korea.kr / 공개

접수등록번호	
접수기록물철	대외문서 접수/ 발송

결재